

- 공원 이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
도시공원 내 제한적 상행위 허용 세부기준(안)

2026. 5.

인 천 광 역 시
[공 원 조 성 과]

목 차

I. 일반사항

1. 목적	4
2. 법적근거	4
3. 적용범위	4
4. 기본원칙	4

II. 상행위 허용 기준

1. 허용 대상 행사	5
2. 허용 장소 및 기간	5
3. 상행위 허용 범위	6
4. 판매시설 기준	7
5. 상행위 제한 및 금지 사항	7

III. 상행위 허가 절차

1. 허가 구분	8
2. 허가 신청	8
3. 제출 서류	9
4. 심사기준 및 허가결정	9
5. 허가증 교부 및 현장 게시	10
6. 사용료 및 점용료의 면제	10

IV. 위생 및 환경 관리

1. 식품위생 기준	10
2. 환경 관리	11
3. 안전 관리	11

V. 현장 관리 및 사후 조치

1. 현장 관리	12
2. 불법 상행위 관리	12
3. 행사 종료 후 사후 관리	12

VI. 위반 시 조치

1. 허가 취소 및 중단 명령	13
2. 제재 및 불이익 처분	13
3.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13

[첨부서류]

[붙임 1] 신청서 서식	15
[붙임 2] 상행위 허가증 서식	23
[붙임 3] 허가조건(안)	24
[붙임 4] 상행위 허가 대상 도시공원	25

I. 일반사항

1. 목적

-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조례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에서의 상행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함으로써,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보전하면서 지역 문화행사의 효율적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 법적 근거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24조
-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7조, 제29조

3. 적용범위

- 1) 이 기준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원녹지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천광역시 내 도시공원에 적용한다.
- 2) 다른 법령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3) 상행위 허가 대상 공원은 [붙임 4]와 같다.

4. 기본원칙

- 1) 도시공원 내 허가받지 않은 상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 2) 상행위는 행사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한다.
- 3) 상행위는 공원의 공공성 및 공익적 기능을 저해하지 않아야 하며, 공원 이용자 및 인근 거주자에게 위해(危害)나 불편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 4) 상행위의 허용 여부 및 범위는 공원관리청이 이 기준에 따라 판단하며, 해당 공원의 위치·성격·규모 및 주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II. 상행위 허용 기준

1. 허용 대상

-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행위에 한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허용할 수 있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후원명칭 사용승인 또는 재정적 지원을 받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
- 2) 위 1)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행사는 상행위 허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 ① 특정 기업·단체 또는 개인의 홍보·판매·판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행사
 - ※ 행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행사구역 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② 공원 이용자 및 인근 거주자에게 소음, 빛공해 등 심각한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행사
 - ③ 공원시설의 훼손이 크다고 공원관리청이 판단하는 행사

2. 허용 장소 및 기간(시간)

- 1) 상행위는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에서만 허용하며, 지정된 장소 외의 구역에서의 상행위는 허용하지 아니한다.
- 2) 상행위 허가 대상 공원 목록 및 허용 구역은 [붙임 4]에 따른다.
- 3) 상행위 장소 지정 시에는 비상차량 통로, 이용자 동선, 인근 편의시설 위치, 빛공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4) 주거지 인근의 생활권공원은 대규모 상행위를 가급적 제한한다.
- 5) 상행위 허용 기간은 해당 행사의 허가된 사용기간 내로 한정하며, 소음·빛공해 등 인근 거주자에게 피해가 없도록 시간을 조정하여 허용한다.
- 6) 행사 유형별 사용허가 기간은 다음 표와 같다.

행사 유형	최대 허가 기간	비고
지역축제, 문화·예술행사 등	2주 이내	
국가·지자체 주최 특성상 장기 필요 행사	6개월 이내	

※ 공원관리청이 행사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간 연장 가능

3. 상행위 허용 범위

- 1) 상행위는 해당 행사의 목적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물품 및 서비스에 한하여 허용한다.
- 2) 상행위의 판매장소 및 품목 등은 행사계획서에 포함하여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3) 상행위자의 선정은 행사 주최자가 행사의 목적과 성격에 맞게 결정하고 공원관리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 주최자는 선정된 상행위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진다.
- 4) 지역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참여를 권장한다.
- 5) 다음 각 호의 상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 ① 행사 관련 기념품, 굿즈, 공예품 등의 판매
 - ② 행사 참가자 및 방문객을 위한 음식·음료 판매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신고를 받은 경우에 한함)
 - ③ 행사 주제와 관련된 체험 프로그램의 유료 운영
 - ④ 행사 관련 서적·도서·예술품 판매
 - ⑤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행사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서비스
- 6) 식품 판매는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를 받은 업체(푸드트럭 포함)만 가능하다.
- 7) 주류는 원칙적으로 판매를 금지한다. 다만, 행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구역을 지정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청소년 주류 제공은 절대 금지한다.
- 8) 허용·금지 품목은 행사 목적과의 관련성, 공원 여건 및 인근 상권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원관리청이 판단한다.
- 9) 판매 품목의 가격은 사회통념상 적절한 수준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4. 판매시설 기준

- 1) 판매시설(부스, 가판대, 푸드트럭 등)은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구역 내에 설치하여야 하며, 통행로(보행로 2m 이상)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 2) 판매시설 설치 및 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등 필요한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 판매시설 고정 시 팩, 못 등은 인조화강석·콘크리트 등 포장된 구역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잔다·흙 등 비포장 구역에서는 사용 후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심의 등에서 모래주머니 사용이 안전상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원관리청의 승인을 받아 포장 구역에서도 팩·못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원상복구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한다.
- 4) 판매시설의 규모·형태는 공원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 5) 상행위자는 공원관리청으로부터 허가증을 발급받아 판매 부스 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5. 상행위 제한 및 금지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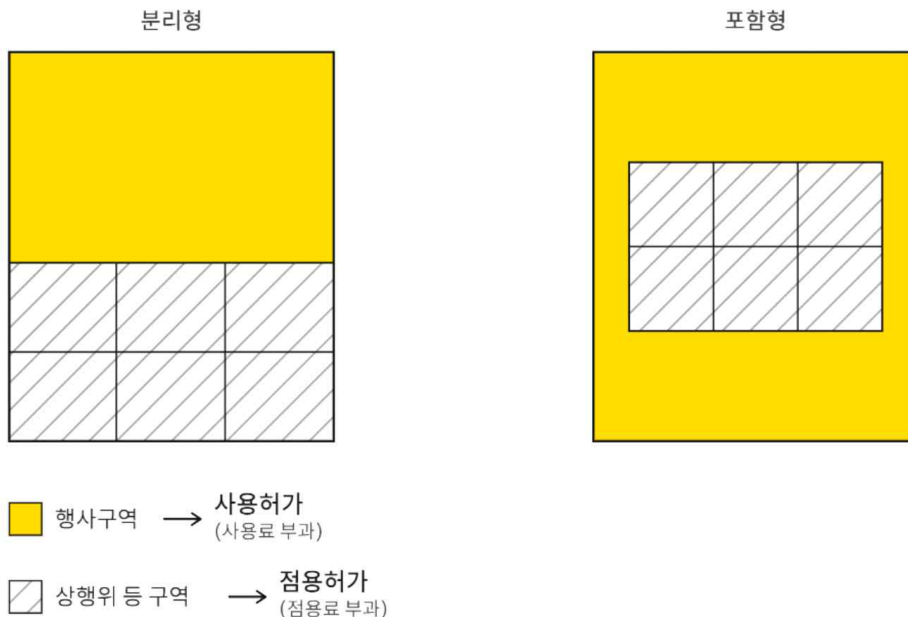
- 1) 행사의 목적과 무관한 판매 행위
- 2) 공원 내 입점한 소매점·편의시설 및 인근 상가의 영업에 과도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품목의 판매
- 3) 담배, 폭죽, 라이터 등 화재 위험이 있거나 공원 이용자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물품 판매
- 4) 앰프·확성기를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발생 및 호객 행위 등 공원 이용자와 인근 거주자에게 불편을 주는 행위
- 5) 허가받지 않은 품목의 추가 판매 행위
- 6)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공원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Ⅲ. 상행위 허가 절차

1. 허가 구분

- 1) **사용허가**: 조례 제15조제1항 [별표 2], 사용료 고시된 이용가능 시설에서 이루어지는 문화행사 등
- 2) **점용허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제3호, 제10호 또는 제13호에 따른 가설건축물로서 행사용 무대, 안내소 및 상행위를 위한 매대 등

※ 참고 (사용허가 및 점용허가 구역)



[요금 산출 (포함형)] * 예시: 운동장 등 사용료 부과 시설
 사용료: 공원시설 사용료 × [(전체면적 - 점용면적) / 전체면적]
 점용료: 점용료(단기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 가설공작물 설치) × 점용면적

2. 허가 신청

- 1) 제한적 상행위를 허용받으려는 행사 주최자는 개최 전 공원관리청에 행사 신청과 함께 상행위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 2) 신청 방법: 공원관리청 방문 또는 공문 제출
- 3) 신청서 서식은 [붙임 1]에 따른다.

3. 제출 서류

- 행사 주최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서류명	비고
공통 (필수)	① 행사신청서 (공원명, 행사명, 행사구분, 사용기간 등)	
	② 행사(상행위)계획서 (행사개요, 행사내용, 일정, 품목, 판매대 수 등)	상행위자 명단, 판매 장소배치도 등 별도 제출
	③ 안전관리계획서 (안전요원 배치, 비상연락망, 교통처리 대책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④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서	
식품 판매 시	⑤ 식품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 사본	행사 시작 3일 전까지
	⑥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행사 시작 3일 전까지
	⑦ 식품위생안전 계획서 (식중독 예방 조치,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담당부서의 승인을 득한 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해당 시	⑧ 후원명칭 사용승인서 또는 재정지원 확인서	조례 제29조 제2항 제2호 해당 시
	⑨ 그 밖에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참고] 행사 규모·특성에 따른 서류 간소화

행사 규모 및 특성에 따라 공원관리청이 제출서류를 간소화할 수 있다.

4. 심사 기준 및 허가 결정

- 1) 공원관리청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 ① 허용 대상 행사 해당 여부 (조례 제29조 제2항 각 호)
 - ② 상행위와 행사 목적 간의 직접적 관련성 여부
 - ③ 공원의 공공성 저해 및 공원 이용자 불편 여부
 - ④ 기존 입점 편의시설과의 품목 중복 여부
 - ⑤ 안전관리계획의 적정성
 - ⑥ 원상복구계획의 실현 가능성
- 2) 공원관리청은 필요한 경우 관계 부서 또는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 3) 허가 시 공원관리청은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 ① 상행위 품목·수량 제한
 - ② 운영 시간·구역 제한
 - ③ 환경·위생·안전 관련 특정 관리 조치 이행 의무

5. 허가증 교부 및 현장 게시

- 1) 공원관리청은 허가 결정 후 [붙임 2]의 서식에 따라 상행위 허가증을 교부한다.
- 2) 상행위자는 허가증을 판매 부스 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반드시 게시하여야 한다.
- 3) 허가증은 허가받은 해당 행사에 한하여 유효하며 타인에게 양도 하거나 다른 행사에 사용할 수 없다.

6. 사용료 및 점용료의 면제

- 1) 조례 제1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점용료 및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여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개최하는 경우
 - ②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2) 사용료 및 점용료의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IV. 위생 및 환경 관리

1. 식품위생 기준

- 1) 식품 조리·가공·판매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 허가 또는 신고를 필한 자에 한하며, 영업허가증 또는 신고증을 행사 시작 3일 전까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2) 식중독 예방을 위하여 식품 취급 인원 전원은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를 갖추어야 한다.
- 3)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하절기(6월~8월) 행사의 경우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계획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4) 식중독 의심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응대 가능한 영업자(대표) 연락처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5) 식품 조리·가공 판매자는 음식물배상책임보험 가입을 하여야 하며, 가입 증명서를 행사 시작 3일 전까지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의] 식중독 발생 시 조치

식중독 발생 시 관할 보건소에 즉시 신고하여야 하며, 행사 주최자 및 해당 상행위자는 관계기관의 역학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식중독 발생 시 해당 상행위자는 향후 공원 내 상행위 허가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2. 환경 관리

- 1) 상행위자는 판매 구역 내 쓰레기통을 자체 배치하고, 판매 구역 내 쓰레기를 수시로 수거하여야 한다.
- 2)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고체)는 당일 공원 밖으로 전량 반출하고, 국물류(액체) 및 잔여 식재료는 공원 외 지역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별도 처리하여야 하며, 공원 내 투기는 금지한다.
- 3) 일회용 컵 등의 일회용품 사용을 가급적 지양하고, 친환경 소재 사용을 권장한다.
- 4) 행사 종료 후에는 구역 내 쓰레기를 전량 수거·반출하고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3. 안전 관리

- 1) 행사 주최자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공연법」, 「경비업법」,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2) 개별 법령에 따라 개최되는 행사·공연 등의 경우 그 법령에 안전관리 계획 등에 관한 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에 따르고, 없을 시에는 “지역축제장 안전관리 매뉴얼(행정안전부, ‘24. 9.)”을 준용한다.
※ 우리 시가 주최·주관하거나 주최·주관자가 없이 순간 최대 500명 이상 인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는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적용하며, 공원관리청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3) 대규모행사의 경우 市, 소방서, 경찰서 등 안전관리 유관기관의 의견을 들어 현지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계획 및 교통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 계획 심의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 4) 화구를 이용한 조리 등 불을 사용하는 행사는 가급적 제한한다. 다만, 행사 목적상 필요하다고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공원관리청이 지정한 장소 내에서만 허용하며, 소화기 배치 등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5) 행사 전반에 걸친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를 행사 개시 3일 전까지 공원관리청에 제출할 것을 권장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다.

V. 현장 관리 및 사후 조치

1. 현장 관리

- 1) 행사 주최자는 허가 범위(행사 구역, 판매 품목 등)를 벗어난 상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 관리 책임을 진다.
- 2) 공원관리청은 행사 기간 중 현장 점검을 통해 상행위 허가 조건 이행 여부, 위생·환경 관리 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 3) 행사 주최자 및 상행위자는 공원관리청의 현장 점검 및 지도·감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 불법 상행위 관리

- 1) 공원관리청은 허가받지 않은 불법 노점 등 상행위에 대하여 즉시 중단 명령 및 퇴거 조치를 할 수 있다.
- 2) 행사 주최자는 행사 구역 내 불법 상행위 발생 시 공원관리청에 즉시 신고하고, 해당 불법 상행위자에 대한 통제·퇴거에 협조하여야 한다.

3. 행사 종료 후 사후 관리

- 1) 공원관리청과 행사주최자는 공원시설 사용기간 종료 후 3일 이내에 합동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시설물 훼손 여부, 복구 대상, 복구 일정 등을 협의한다.
- 2) 행사주최자는 합동 현장점검 결과에 따라 훼손된 시설을 지체 없이 원상복구하여야 하며, 원상복구 완료 후 사진 등 증빙자료를 공원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3) 시설 훼손이 중대하여 즉시 복구가 곤란한 경우, 행사 주최자는 공원관리청과 협의하여 복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복구를 이행하여야 한다.

VI. 위반 시 조치

1. 허가 취소 및 중단 명령

- 공원관리청은 조례 제1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상행위 허가를 취소하거나 즉시 중단을 명할 수 있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 2) 허가받은 상행위 품목·장소·기간 외의 상행위를 하는 경우
 - 3) 이 기준에서 정한 금지 사항을 위반한 경우
 - 4) 공원 이용자 및 인근 거주자에게 현저한 불편이나 피해를 끼치는 경우
 - 5) 공원관리청의 정당한 지시 또는 시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
 - 6) 허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제재 및 불이익 처분

- 1) 공원관리청은 위반 행위의 경위, 피해 정도, 이행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재 수위를 결정한다.
- 2) 허가를 받지 않거나 허가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시설을 설치한 경우 공원녹지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고지한다.

3. 이의신청 및 불복 절차

- 1) 공원관리청의 허가 거부·취소·중단 명령 등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2) 그 밖에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이의신청 절차를 이용할 수 있다.

부 칙

이 기준은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인천광역시조례 제7707호, 2026.3.4. 공포) 시행일(202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 붙임 1. [붙임 1] 신청서 서식 각 1부.
- (1-1) 사용허가 신청서
 - (1-2) 점용허가 신청서
 - (1-3) 도시공원 내 행사(상행위) 신청서
 - (1-4) 행사(상행위) 계획서
 - (1-5)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계획서
 - (1-6) 안전관리계획서
 - (1-7)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2. [붙임 2] 상행위 허가증 서식 1부.
3. [붙임 3] 허가조건(안) 1부.
4. [붙임 4] 상행위 허가 대상 도시공원 1부. 끝.

[붙임 1] (1-1) 사용허가 신청서

도시공원(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제4조 관련)				
접수번호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공원명 및 사용시설				
사용 일시		20 년 월 일(: ~ :) (시간)		
사용 목적				
사용 방법	인원		사용요금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7조 및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 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붙임 1] (1-2) 점용허가 신청서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4.8.7>

도시공원 점용허가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15일
신청자	성명(법인인 경우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도시공원(녹지)	명칭	
	위치	
점용목적 및 대상		
점용장소 및 면적	장소	
	면적	
점용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제3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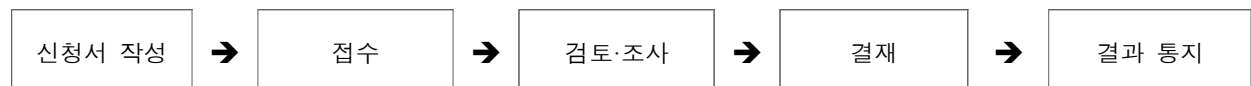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위치도 및 평면도를 포함합니다) 2. 공사시행계획서 3. 원상회복계획서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지적도(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의 경우에만 확인합니다)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붙임 1] (1-3) 도시공원 내 행사(상행위) 신청서

도시공원 내 행사(상행위) 신청서						
접수번호:						
기본 사항	기관·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담당자 성명			담당자 연락처	전화 : 이메일 :	
	주소	(-)				
신청 내용	공원명 (사용구역)					
	행사명					
	행사구분	공연	☐ 무용 ☐ 연극 ☐ 음악 ☐ 퍼포먼스 ☐ 기타()			
		전시	☐ 회화 ☐ 조형 ☐ 미디어 ☐ 설치 ☐ 건축 ☐ 기타()			
		행사	☐ 축제 ☐ 학술행사 ☐ 교육 ☐ 기념식 ☐ 기타()			
		촬영	☐ 영화 ☐ 방송 ☐ 영상콘텐츠 ☐ 광고 ☐ 기타()			
	사용기간 (1안)	본행사	년	월	일(:) ~ 월 일(:)(총 일)	
		설치	년	월	일(:) ~ 월 일(:)(총 일)	
		리허설	년	월	일(:) ~ 월 일(:)(총 일)	
		철거	년	월	일(:) ~ 월 일(:)(총 일)	
	사용기간 (2안)	본행사	년	월	일(:) ~ 월 일(:)(총 일)	
		설치	년	월	일(:) ~ 월 일(:)(총 일)	
		리허설	년	월	일(:) ~ 월 일(:)(총 일)	
		철거	년	월	일(:) ~ 월 일(:)(총 일)	
	첨부	1. 행사(상행위)계획서(붙임 1-4) 2.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계획서(붙임 1-5) 3. 안전관리계획서(붙임 1-6)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공원사업소 소장 귀하 ○○○ 단체명(직인 날인)					

[붙임 1] (1-4) 행사(상행위)계획서

행사(상행위)계획서																						
기본 사 항	기관·단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담 당 자 성 명		담 당 자 연 락 처	전 화 : 이 메 일 :																		
행사개요		☐ 행 사 명 : ☐ 신청기간 : ☐ 신청장소 : ☐ 주요내용 : ☐ 참여인원 : ☐ 주최주관 :																				
행사내용		☐ 개최목적 - ☐ 운영방향 - - ☐ 행사내용 - - ☐ 주요일정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margin-top: 5px;"> <thead> <tr> <th style="width: 30%;">시 간</th> <th style="width: 40%;">내 용</th> <th style="width: 30%;">비 고</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00:00~00:00</td> <td></td> <td></td> </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r><td></td><td></td><td></td></tr> </tbody> </table> ☐ 특이사항			시 간	내 용	비 고	00:00~00:00														
시 간	내 용	비 고																				
00:00~00:00																						

[붙임 1] (1-5)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 계획서

시설물 설치 및 원상복구계획서

☐ **시설물 설치 내역**

시 설 명	규 격(m) (가로×세로×높이)	사 용 용 도	개 수
무대		무대	1
안내소		안내 및 미아보호소	2
판매시설		농산물 판매	2
판매시설		악세서리 판매	1
장비(스피커)		(출력용량)	2
현수막			

※ 행사를 위해 설치되는 모든 시설물 기재 (동원장비, 무대, 테이블, 의자, 현수막, 음향 등)
 - 현수막 등에 새겨진 문구를 “사용용도”란에 기재, 음향 : 스피커 출력용량 반드시 기재

☐ **원상복구 계획** : 시설물 철거, 쓰레기 수거방법 등

○ 시설물 철거

-
-
-

○ 쓰레기 수거방법(청소용역 계약 등)

-
-

☐ 비상시 조치사항

발생유형별	조치사항	책임
신고	경찰서·소방서 전화	
응급의료	구급차 전화()	
차량통제	경찰서 교통과(2096-8345)	

☐ 시간별 안전대책

시간	세부내용	안전조치방안
09:00~10:00	개회식, 축사 등	참가자 통제
10:00~11:00	1부 공연	출입 통제

☐ 기타 안전대책

- 가입(예정)보험 (보험), 가입(예정)일()
 - 보험 가입 후 보험 증서를 행사일 3일전까지 제출
- 응급의료 조치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 문화 공연·행사·축제 등은 119 구급요원 등을 현장에 배치
 - ▷ 민간단체의 공연·행사·축제 등은 사전에 관련기관 협의를 통해 민간 이송업체 또는 병원구급차 이용 조치
- 기타, 야간 행사의 경우 참여 시민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안전선(safety line) 등을 설치하고 안전요원을 증원 배치

☐ 주차 및 화장실 운영계획

- 참가자가 개인 차량 이용시 주차 관련 사항 안내
- 공원 경관을 저해하지 않는 이동식 화장실 설치를 요구할 수 있음

※ 개최되는 행사 특성따라 별도의 양식으로 제출 가능 (상기 내용 필히 포함)

[붙임 1] (1-7)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이용 준수사항 동의서

1. 시설물 설치

- 가. 시설물은 시민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설치(통행로 2m 이상 확보)
- 나. 시설물 설치·철거 시에는 안전펜스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작업장 등의 안전기준 준용(몽골텐트 고정은 모래주머니 사용, 팍 사용불가)
- ▶ 작업 중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에게 민·형사상 모든 책임이 있음.

2. 소음기준 : ‘소음·진동 관리법’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규정된 기준 준수

- 아침(05:00~07:00), 저녁(18:00~21:00) 60dB이하, 주간(07:00~18:00) 65dB이하

3. 행사장 관리

- 가. 행사 전반에 걸친 배상책임보험가입 제출 권장
- 나. 행사장 내 질서요원을 배치하여 금연구역(주차장 포함)내 흡연계도, 무허가상인 단속
- 다. 공원 내 차량 통행 허가는 차량 담당자와 별도 협의하여 승인(승용차량 출입제한)
- 라. (대형 행사) 청소는 참가자가 많이 모이는 주요 출입구까지 청소 전문 대행업체에 의뢰하여 시행 (일반 행사) 직접 수거(분리수거, 종량제쓰레기봉투 필수) 가능
- 마. 공원 내 준수사항 계도(차량 및 반려동물 출입, 그늘막(텐트), 캠핑장비설치 등 금지사항) 및 잔디광장에서 잔디훼손이 우려되는 체육활동(축구, 야구, 계주 등)은 할 수 없음
- 바. 아파트, 주거지역에 인접한 장소에서는 앰프 사용 원칙적 금지
- 사. 순간 최대 관람객 500명 이상 1,000명 미만행사는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공원관리청과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아. 1,000명 이상(행사장 내 1시간 동안 관람객 수)이 참여하는 문화행사(옥외행사, 지역축제, 야외공연)는 개최 3주 전까지 공원 소재지역 구청 안전관리 부서로 안전관리계획 심의 요청함.
- 자. 1,000명 이상이 참여하는 체육행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11조의9에 나열된 사항을 체육 행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며, 행사 종료시까지 안전점검표를 사용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함.
- 차. 행사로 인한 시설물 파손 및 잔디 등을 훼손한 경우에는 주최사에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 ▶ 불이행시 공원녹지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

4. 기타 제한 사항

- 가. 일회용품 사용 지양(1회용 컵, 플라스틱 빨대, 비닐봉투 등)
- 나. 인천광역시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음주행위 지양
- 다. 장소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제3자에게 사용·수익허가 할 경우 행사 제한
- 라. 행사 종료시간(21:00) 준수 (※단, 공원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변경 가능)
- 마. 허가받지 않은 현수막 및 기타 시설물 등 설치 금지(발견즉시 철거)

5. 위의 준수사항 위반 시 주최자(단체) 및 대행사에 대하여 페널티 부여 등 조치

위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동의합니다.

2026. . . 주 최 자 (대표) 0 0 0 (인)

[붙임 3] 허가조건 (안)

【 허가조건 (안) 】

▶ 운영 일반

- 상행위는 허가받은 품목·장소·기간 내에서만 운영
- 상행위자는 허가증을 판매 부스 내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
- 판매 품목 가격은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으로 구성
- 허용·금지 품목은 행사 목적·공원 여건·인근 상권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원 관리청이 판단

▶ 판매 품목

- 식품 판매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허가·신고 업체(푸드트럭 포함)만 가능
- 주류 원칙적 판매 금지. 단, 공원관리청 인정 시 지정 구역 내 제한적 허용 가능 (청소년 제공 절대 금지)
- 담배·폭죽·라이터 등 화재 위험 또는 안전 저해 우려 물품 판매 금지
- 행사 목적과 무관한 판매, 인근 상권에 과도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품목 판매 금지

▶ 시설 및 환경

- 판매시설은 공원관리청 지정 구역 내 설치, 보행로 2m 이상 확보
- 팩·못 등 공원시설 훼손 방법 사용 금지 (모래주머니 등 사용)
- 앰프·확성기를 이용한 과도한 소음 발생 및 호객 행위 금지
- 일회용품 사용 지양, 친환경 소재 사용 권장

▶ 위생 및 안전

- 안전관리·청소·훼손시설 복구 의무는 행사 규모와 상관없이 부과
- 판매 과정에서 발생한 음식물류는 당일 공원 밖으로 전량 반출
- 국물류(액체) 및 잔여 식재료는 공원 외 지역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별도 처리
- 하절기(6~8월) 행사의 경우 식품 안전검사 실시계획을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 배상책임보험 가입 증명서 행사 개시 3일 전까지 제출 권장

※ 위 조건은 공통 사항이며, 공원관리청은 공원별 특성에 따라 조건을 추가하거나 달리 부가할 수 있다.

[붙임 4] 상행위 허가 대상 공원

상행위 허가 대상 공원 (도시공원 내 상행위)

○ 유형구분

구분	허가범위	기재 필수 항목	비고
유형1	공원 단위 지정(공원 내 전역 허가)	공원명	(25개소)
유형2	구역 단위 지정(특정 장소 한정)	공원명, 세부 위치	(14개소)
유형3	면적 단위 지정(점용 면적까지 제한)	공원명, 세부위치, 지정면적	(3개소)

○ 상행위 허가 대상 공원 현황(총 42개소 취합)

연번	제출부서	지정유형	공원명	상행위 가능구역		비고
				구역	면적	
1	인천대공원사업소 (4)	유형2	중앙공원	2지구 광장	2,500m ²	
2		유형2	중앙공원	2지구 운동장 (3개소)	7,000m ²	
3		유형2	중앙공원	4지구 광장	4,000m ²	
4		유형2	중앙공원	8지구 광장	5,000m ²	
5	경제청 환경녹지과 (12)	유형1	해돋이공원 (송도1호)			
6		유형1	신송공원 (송도6호)			
7		유형1	새아침공원 (송도5호)			
8		유형1	미추홀공원 (송도2호)			
9		유형1	솔찬공원 (송도24호)			
10		유형1	센트럴파크 (송도28호)			
11		유형1	달빛공원 (송도23호)			
12		유형1	글로벌파크			
13		유형1	랜드마크시티 1호 체육공원			
14		유형1	랜드마크시티 3호 근린공원			
15		유형1	랜드마크시티 17호 근린공원			
16		유형1	랜드마크시티 18호 근린공원			

연번	제출부서	지정유형	공원명	상행위 가능구역		비고
				구역	면적	
17	경제청 청라관리과 (4)	유형1	청라호수공원			
18		유형1	녹청공원			
19		유형1	창해공원			
20		유형1	정서진공원			
21	경제청 영종관리과 (1)	유형1	씨사이드파크	-	1,774,626m ²	
22	강화군 산림공원과 (4)	유형1	갑룡공원			
23		유형1	관청공원			
24		유형1	길상공원			
25		유형1	남산공원			
26	중구 도시개발과 (3)	유형1	하늘체육공원			
27		유형1	영마루공원			
28		유형2	자유공원	광장		
29	미추홀구 공원녹지과 (1)	유형2	수봉공원	인공폭포 앞 광장	1,540m ²	
30	연수구 공원녹지과 (1)	유형1	연수한마음공원		82,649m ²	
31	남동구 공원녹지과 (3)	유형2	해오름공원	시설물 구역 (녹지지역 제외)		
32		유형2	어울근린공원	시설물 구역 (녹지지역 제외)		
33		유형2	아시아드근린공원	시설물 구역 (녹지지역 제외)		
34	계양구 공원녹지과 (9)	유형1	계산체육공원		22,280m ²	
35		유형2	오조산근린공원	분수광장		
36		유형2	이촌근린공원	야외무대 앞 공간		
37		유형2	임학어린이공원	광장		
38		유형2	작전문화공원	야외공연장 및 광장		
39		유형2	서운근린공원	광장		
40		유형3	서운근린공원	풋살장	880m ²	
41		유형3	효성어린이공원	축구장	3,312m ²	
42		유형3	작전어린이공원	축구장	2,146m ²	

붙임

상행위 허가 대상 공원

☐ **인천대공원사업소 (중앙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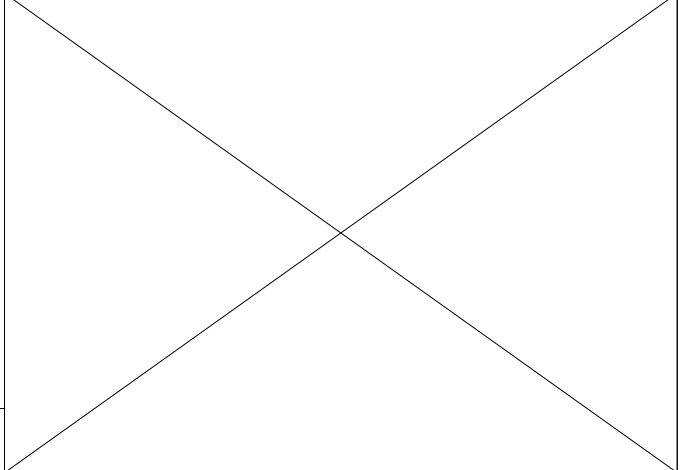
중앙공원 2지구 광장, 운동장



중앙공원 4지구 광장



중앙공원 8지구 광장



☐ **강화군**



갑룡공원(위치도)



갑룡공원(현황사진)



관청공원(위치도)



관청공원(현황사진)



길상공원(위치도)



길상공원(현황사진)



남산공원(위치도)



남산공원(현황사진)

□ 중구



하늘체육공원(위치도)



하늘체육공원(현황사진)



영마루공원(위치도)



영마루공원(현황사진)



자유공원(위치도)



자유공원(현황사진)

□ 미추홀구



수봉공원(위치도)



수봉공원(현황사진)

□ 연수구



연수한마음공원(위치도)



연수한마음공원(현황사진)

□ 계양구



계산체육공원(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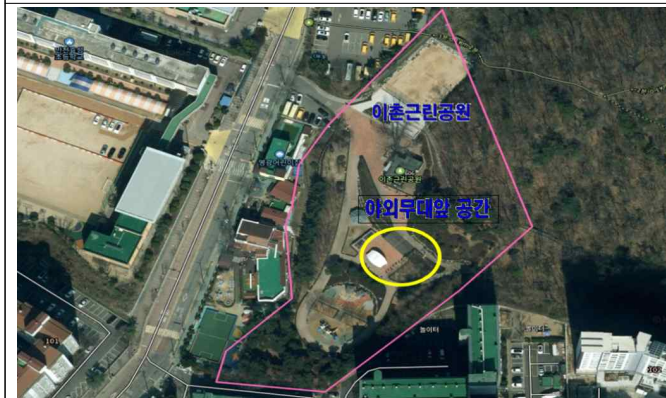
계산체육공원(현황사진)



오조산근린공원(위치도)



오조산근린공원(현황사진)



이촌근린공원(위치도)



이촌근린공원(현황사진)



임학어린이공원(위치도)



임학어린이공원(현황사진)



작전문화공원(위치도)



작전문화공원(현황사진)



서운근린공원(위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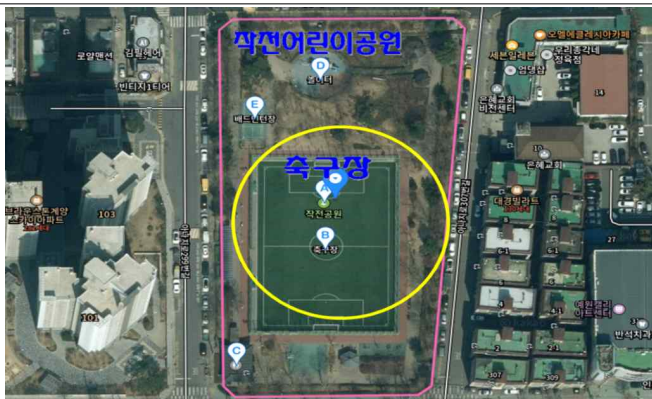
서운근린공원(현황사진)



효성어린이공원(위치도)



효성어린이공원(현황사진)



작전어린이공원(위치도)



작전어린이공원(현황사진)